회계학 2부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같은 자료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장부상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며,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24기 사업연도(2024.1.1. ~ 2024.12.31.) 배당수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주)한국으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는 모두 내국법인으로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래 1, 2, 3의 내용은 상호 독립적이다.

1. (주)한국은 2023년 1월 1일 (주)한강의 주식 100주(총발행주식 8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를 ₩750,000에 구입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1) 2023년말 (주)한강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주당 ₩5,500으로 회사는 평가차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2) (주)한강은 2024년 3월 5일 상법상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당 ₩10,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주)한국은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장부상 회계처리 하였다.
 (3) (주)한강은 2024년 10월 1일 보유주식 중 40주를 ₩500,000에 처분하고 처분이익 ₩200,000을 인식하였다.
 (4) (주)한국은 무차입경영으로 지급이자는 없다.

2. (주)한국은 2023년 7월 1일 (주)남강의 주식 1,000주(총발행주식수 5,000주, 주당 액면가액 ₩1,000)를 ₩1,200,000에 취득하였다.
 (1) 2024년 12월 31일 주식의 장부가액은 ₩1,500,000으로 취득원가와의 차이는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것으로 회사는 2023년 ₩100,000, 2024년 ₩200,000의 지분법이익을 각각 인식하였다.
 (2) 2024년 3월 1일 (주)남강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주당 ₩1,000의 배당을 결의, 지급하였으며 (주)한국은 배당금 수령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다.
 (3)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한국의 자산총액 적수는 ₩2,190,000,000이며, 2024년 지급이자는 ₩1,500,000이다.

3. (주)한국은 (주)동강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있다. (주)동강 주식 관련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1월 5일 (주)동강의 주식 750주(25%, 주당 액면가액 ₩10,000)를 ₩9,000,000에 취득하였다.

(2) 2023년 3월 31일 (주)동강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500주를 수령하였으며 잉여금 자본전입 총 재원은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 재원	금 액	비 고
합병차익	₩4,500,000	적격합병차익 총 ₩6,000,000 중 일부의 자본전입으로 전체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 이익잉여금 ₩1,000,000 합병평가차익 ₩2,000,000 감자차익 ₩1,500,000
토지재평가적립금	5,000,000	재평가적립금 중 일부의 자본전입으로 재평가세 3%와 1%의 구성비율은 7:3임
주식발행초과금	2,500,000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초과금임
자기주식소각이익	8,000,000	주식취득일: 2020.3.1., 주식소각일: 2022.6.30.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 ₩3,000,000이 포함됨
계	₩20,000,000	

(3) 2023년 10월 1일 (주)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주)동강의 주식 중 250주를 주당 ₩15,000에 처분하고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처리하였다.

(4) 2024년 (주)동강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한국은 보유주식 중 500주를 반환하고, 감자대가로 주당 ₩25,000의 현금을 2024년 8월 9일(자본감소결의일: 2024년 7월 31일)에 수령하였다. 이에 대한 (주)한국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2,500,000 (대) FVPL금융자산 3,600,000
FVPL금융자산처분이익 8,900,000

(5) (주)한국의 2023년 지급이자는 없으며, 2024년 지급이자는 ₩2,000,000이고, (주)한국의 2024년 12월 31일 자산총액 적수는 ₩12,500,000,000, (주)한국이 보유한 (주)동강의 세무상 주식 적수는 ₩3,750,000,000으로 가정한다.

물음 1) <자료 1>에 대하여 (주)한국의 제24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5점)

자료 항목번호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가산조정	차감조정
1		
2		
3		

3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	원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24기 사업연도(2024.1.1. ~ 2024.12.31.)의 회계처리 내용이다. 회사는 모든 회계처리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래 1, 2, 3의 내용은 상호 독립적이다.

1. (주)한국은 2024년 2월 1일 제품을 개당 ₩100에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고객이 6개월 이내에 제품을 5,000개 이상 구매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개당 가격을 소급하여 ₩80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주)한국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임계치인 제품 5,000개의 구매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거래가격이 제품 개당 ₩80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2) 2024년 2월 2일 해당 제품 1,000개를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 수취채권	100,000	(대) 매 출	80,000
		환불부채	20,000

2. (주)한국은 회사의 신제품을 고객에게 개당 ₩50,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제품 판매 후 2개월 이내에 ₩50,000 한도의 구매에 대해 20%의 할인권을 고객에게 주었다. 한편 (주)한국은 신제품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2개월 동안 모든 판매에 대해 5%의 할인을 제공할 계획인데, 해당 할인은 20%의 할인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한국은 고객의 2/3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평균 ₩37,500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 2024년 중 (주)한국과 고객 간에 ₩50,000의 제품판매가 이루어졌고 이후 2개월 내에 고객이 할인권을 사용하여 ₩30,000에 판매하는 제품을 20% 할인한 ₩24,000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할인권은 2024년 중 기간경과로 소멸하였다.
(3) 위 거래에 대한 장부상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시점	(차) 수취채권	50,000	(대) 매 출		45,455
			계약부채		4,545
② 할인권사용시점	(차) 현 금	24,000	(대) 매 출		27,636
	계약부채	3,636			
③ 할인권소멸시점	(차) 계약부채	909	(대) 수 익		909

3. (주)한국은 (주)북강에 자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4년 1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조건에 따르면 자산에 대한 통제는 2년이 경과 후 이전될 것이며, (주)북강은 2가지 지급방법(방법1: 계약에 서명할 때 ₩1,000,000을 지급하는 방법, 방법2: 2년 경과 후 자산을 이전(통제)할 때 ₩1,500,000을 지급하는 방법) 중 방법1을 선택하고 ₩1,000,000을 (주)한국에 지급하였다.
(2) 두 가지 대체지급 선택권을 동등하게 하는 거래의 내재이자율은 약 22.5%이나, (주)한국은 계약 개시시점에 (주)한국과 (주)북강이 별도 금융거래를 할 경우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10%로 판단하였다.

물음 2) '<자료 2>의 1'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고객이 제품을 5,000개 이상 구매하였을 경우(가)와 6개월 이내에 제품을 5,000개 이상 구매하지 못하였을 경우(나)로 구분하여 2024년 2월 2일 회계처리 부분에 한하여 2024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수취채권은 2024년 중 회수되었으며, 양식상 조건구분에 따른 세무조정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할 것) (2점)

조건구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가	
나	

물음 3) '<자료 2>의 2와 3'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다음의 경우로 구분하여 2024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양식상 조건구분에 따른 세무조정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할 것) (5점)

자료구분	조건구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자료2>의 2	할인권 사용시점	
	할인권 소멸시점	
<자료2>의 3	계약시점	
	자산 이전시점	

<자료 3>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중소기업 아님)인 (주)내국의 제24기(2024.1.1. ~ 2024.12.31.)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1, 2의 내용은 상호 독립적이다.

1. (주)내국은 2023년 1월 1일 액면 ₩200,000,000, 이자율 연 5%(이자지급일은 매년 12.31.임), 3년 만기 회사채를 ₩189,503,200에 구입(유효이자율 연 7%)하였다.
(1) 2023.1.1. 현재 회사채의 공정가치는 원리금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취득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조정표는 다음과 같다.

일자	유효이자	액면이자	금융자산증액	장부금액
2023. 1. 1.				189,503,200
2023.12.31.	13,265,224	10,000,000	3,265,224	192,768,424
2024.12.31.	13,493,790	10,000,000	3,493,790	196,262,214
2025.12.31.	13,737,786	10,000,000	3,737,786	200,000,000
계	40,496,800	30,000,000	10,496,800	

(3) 회사채의 매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191,500,000(2023년), ₩198,500,000(2024년)으로 가정한다.
(4) (주)내국은 취득한 회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정가치평가와 관련된 2024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 3,506,210 (대) 금융자산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1,268,424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2,237,786

2. (주)내국의 건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내국은 2023년 2월 1일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 30일에 완공하였다.

(2) 신축공사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은 전액 본사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	금 액	내 용
2023년(23기)	₩20,000,000	건설자금이자 해당액으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처리
2024년(24기)	₩10,000,000	건물 준공으로 차입금은 2024년 8월 31일 전액 상환하였으며 모두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처리

(3) 2024년 건물의 건설 중에 발생한 기업업무추진비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18,000,000이며 이 금액 중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에 따라 이미 세무조정된 금액은 ₩8,000,000이다.

(4)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 ₩40,000,000을 장부상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5) 건물의 완공 후 건설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된 취득원가는 ₩5,000,000,000이며 신고내용연수는 40년, 사업연도기간은 1.1～12.31이다.

물음 4) <자료 3>을 이용하여 (주)내국의 제24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자료 3>의 1'의 세무조정은 공정가치 회계처리 부분만을 제시하고, '<자료 3>의 2' 중 이미 세무조정된 부분은 표시하지 말 것) (8점)

구 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자료 3>의 1	
<자료 3>의 2	

【문제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은 제11기 사업연도(2024.1.1. ~ 2024.12.31.) 5월 1일 가전사업부를 분리하여 (주)대한을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액면가액 총액 ₩1,000,000,000)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의 사업부 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 분할 이후 과세이연 중단사유는 없으며, (주)한국과 (주)대한의 분할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법인세 최소화를 고려하여 모두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다음의 <표 1>과 <표 2>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적격분할당시 가전사업부의 자산명세서

자산	시가(2024.5.1. 분할등기일 기준)	장부가액(2024.4.30. 기준)
주식	₩240,000,000	₩200,000,000
건물	₩400,000,000	₩380,000,000
토지	₩560,000,000	₩500,000,000
합계	₩1,200,000,000	₩1,080,000,000

<표 2> (주)한국이 처분한 (주)대한 주식 및 (주)대한이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명세서

처분연도	(주)한국이 처분한 (주)대한 주식의 장부가액	(주)대한이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2028	₩400,000,000	₩40,000,000
2029	₩560,000,000	₩20,000,000
2030	₩240,000,000	₩60,000,000
합계	₩1,200,000,000	₩120,000,000

* (주)대한은 승계자산의 처분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내 (주)한국에 통지하였다.

물음 1) (주)한국과 (주)대한의 분할시 법인세법에 따른 각 법인의 회계처리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2점)

법인	차변	대변
(주)한국		
(주)대한		

물음 2) 처분 연도별 (주)한국의 익금산입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계산	익금산입액
2028		
2029		
2030		

<자료 2>

1. 비상장영리내국법인인 (주)민국은 제10기 사업연도(2024.1.1. ~ 2024.12.31.) 중 5월 1일 60,000주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주주에게 보유주식 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였다.

2. (주)민국의 주주 구성은 (주)서울 40,000주(40%), (주)대구 30,000주(30%), (주)부산 20,000주(20%), (주)제주 10,000주(10%)로 이루어진다. 주주는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3. 2024년 5월 1일 (주)서울과 (주)부산은 신주를 배정주식의 50%만 인수하였으며, (주)대구와 (주)제주는 100% 인수하였다.

4. (주)대구는 (주)서울과 (주)부산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각각 소유하고 있다.

5. (주)민국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80,000이며,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40,000이다.

6. (주)대구는 (주)민국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대금 전액을 B은행으로부터 2024년 5월 1일 연이자율 6%(2년 만기)의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7. (주)대구의 기존 차입금 및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제11기 사업연도 (2023.1.1. ~ 2023.12.31.) 11월 1일 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600,000,000 (2년 만기, 연이자율 4%)

 ② 제12기 사업연도 (2024.1.1. ~ 2024.12.31.) 10월 1일 상근 전무이사 甲씨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한 ₩400,000,000

8. (주)대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전기 사업연도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다.

9. (주)대구는 과거 과세표준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법인세 최소화를 고려한다.

10.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5.5%, 1년은 365일로 가정하며 지급이자는 일할 계산한다.

물음 3) 상기의 <자료 2>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주)대구의 제12기 사업연도(2024.1.1. ~ 2024.12.31.) 주식인수 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세무조정을 제시하시오. (세무조정이 없으면 '세무조정 없음'으로 표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2) (주)대구의 제12기 사업연도(2024.1.1. ~ 2024.12.31.)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주식인수자금의 차입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행하고 그 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구 분	금 액
신주인수자금차입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액	원
신주인수자금차입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액	원

(3) (주)대구의 제12기 사업연도(2024.1.1. ~ 2024.12.31.) 세무조정 시 주식인수자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액이 변동된다. 그 변동 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이자율 계산시 백분율 기준 소수점 세자리에서 절사하시오. (예시: 3.053% → 3.05%)

구 분	변 동 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동분	%
익금산입액의 변동액	원

【문제 3】 거주자 甲(56세)의 2024년도 귀속 소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제시된 금액은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1. 사업소득 관련 자료

(1) 甲은 거주자 乙, 丙과 함께 국내에 3개의 등기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3주택 모두 甲, 乙, 丙 각자의 지분율은 60% : 30% : 10%로 동일함)하고 있으며, 동 주택을 이용하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2) 주택의 임대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임대기간	임대조건	공동사업자 및 손익분배비율*
주택A	2023.1.1.~2024.12.31.	임대보증금₩200,000,000 수령	甲(본인) : 20% 乙(아들) : 50% 丙(며느리) : 30%
주택B	2022.5.1.~2024.4.30.	임대보증금 ₩200,000,000 수령	
주택C	2023.1.1.~2024.12.31.	임대보증금₩100,000,000외에 월₩1,600,000의 임대료를 매월 말에 받기로 함	

* 2024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된 손익분배비율이며, 실제 손익분배비율은 각자의 지분율과 합치됨이 밝혀졌다.

(3) 乙과 丙은 모두 거주자 甲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의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주택임대와 관련된 필요경비는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상 금액은 ₩8,500,000이다.

(5)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수익 등 운용수익은 없다.

(6)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은 연 3.65%이며, 1년은 365일이라고 가정한다.

(7) 세 주택 모두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면적이 1세대 당 40m^2를 초과하며,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모두 2억원을 초과한다.

2. 근로소득 관련 자료

(1) 甲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에 회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에 지급받은 급여는 ₩42,000,000(월 ₩3,500,000×12개월)으로 이 금액에는 '(2)~(7)'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주)대한의 2023년 사업연도(2023.1.1.~2023.12.31.)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2,000,000이다. 동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24.6.30.에 받았다.

(3) 배우자명의의 차량을 甲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3,600,000(월 ₩300,000×12개월)이다.

(4) 사내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특강을 하고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강사료는 ₩800,000이다.

(5)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사설어학원에 수강등록하고 (주)대한으로부터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1,500,000을 지급받았다.

(6) 甲은 중식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대신 다른 근로자와 함께 (주)대한으로부터 일률적으로 ₩3,000,000(월 ₩250,000×12개월)의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급식수당과 별도로 연 ₩500,000 상당의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연금소득 관련 자료
(1) 甲은 2010.1.1.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총 ₩80,000,000을 납입(이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15,000,000임)하였으며, 2024년 중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에서 ₩50,000,000을 인출하여 수령하였다. 인출액 중 ₩18,000,000은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4.1.20.에 인출한 것이며, ₩32,000,000은 그 후에 인출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100,000,000이며 납입액 외에 이연퇴직소득 ₩15,000,000, 연금계좌 운용수익 누계액 ₩5,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2) 甲은 국가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총 ₩50,000,000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002.1.1. 이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은 ₩10,000,000이며, 이 중에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8,000,000이다. 총 기여금의 납입월수는 300개월이며, 2002.1.1. 이후의 기여금 납입월수는 200개월이다. 甲은 2024년도에 해당 연도분 연금으로 ₩30,000,000을 수령하였다.
(3)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5%이다.

4. 퇴직소득 관련 자료
(1) 甲은 2011.5.20. 입사하여 (주)경기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24.8.31. 퇴직하였다.
(2) 甲은 퇴직시 (주)경기로부터 퇴직급여로 ₩580,000,000을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3)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120,000,000이다.
(4)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150,000,000이다.
(5) 甲이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25,000,000이다.
(6) 선택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다.

5. 양도소득 관련 자료
(1) 2010.3.8. 乙은 토지를 ₩500,000,000에 취득하였다.
(2) 2020.4.10. 甲은 부친인 乙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의 등기된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개시당시 시가평가액은 ₩1,500,000,000이다. 동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70%이다.
(3) 2024.10.15. 甲은 상속받은 등기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서울에 ₩2,000,000,000(시가 ₩1,800,000,000)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서울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세무조정하였다.
(4)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양도비용은 ₩30,000,000으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
(5) 위의 토지 이외에 甲이 2024년 중에 양도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없다.

6. 근로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7. 근속연수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8. 환산급여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9.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4년 이상 5년 미만	8%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7년 이상 8년 미만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8년 이상 9년 미만	16%	15년 이상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 소득세 기본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0,000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0,000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360,000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0,000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0,000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0,000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10억원 초과	384,060,000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물음 1)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금액	甲의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금액
①	②

(2)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①	②

물음 2)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③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연금수령한도	①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	②
사적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③

(2)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다만, ③, ④의 금액 계산시 퇴직소득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퇴직소득금액이 ₩445,000,000이라고 가정한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①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②
퇴직소득 과세표준	③
퇴직소득 산출세액	④

물음 3) 토지양도와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8점)

양도가액	①
취득가액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	④

【문제 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4.10.1. ~ 2024.12.31.)의 거래자료이다. (단, 제시된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1. 2024.10.7.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을 ₩734,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3,400,000을 받았으며, 2024.12.20. 잔금 ₩660,600,000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 구축물의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거래가액을 정하거나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1)	기준시가*1)	감정가액*2)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토지	₩200,000,000	₩200,000,000	₩300,000,000	₩306,000,000	₩420,000,000
건물	300,000,000	276,000,000	450,000,000	460,000,000	265,100,000
구축물	100,000,000	84,000,000	-	80,000,000	48,900,000
합계	₩600,000,000	₩560,000,000	₩750,000,000	₩846,000,000	₩734,000,000

*1)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는 매매계약일 현재 가액임
*2) 감정가액은 2024.1.1.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임

2.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면적 500m^2, 임차보증금 ₩100,000,000)의 일부(면적 200m^2)를 2024.10.1. (주)A(특수관계인이 아님)에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 ₩55,000,000을 수령하였다. 월 임대료는 ₩3,000,000으로 매월 말일에 수령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임대보증금을 그 임대료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주)A가 10월분 임대료 ₩3,000,000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주)대한은 12월 1일에 임대보증금을 10월분 임대료에 충당하였다. 2024.10.1. ~ 2024.12.31. 중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500,000이다. (단,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3. 일부 제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일	제품인도일	대금수령일	금액
제품1	2024.12.29.	2025.1.8.	2024.12.28.	₩5,000,000
제품2	2024.12.30.	2025.1.9.	2025.1.5.	₩6,000,000
제품3*1)	2024.12.26.	2025.1.5.	2025.1.20.	₩7,000,000

*1) B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B 거래처와의 제품 공급에 관한 약정서에 따르면 공급하는 제품의 대금 청구시기는 제품인도일의 10일 전이며, 대금 지급시기는 제품인도일로부터 15일 후임

4.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지급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일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2024.10.17. 거래처의 사정으로 기계장치 구입계약이 취소되었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지급일	2024.6.21.	2024.9.2.	2024.11.28.	잔금 지급일에 인도함
금액	₩5,000,000	₩30,000,000	₩40,000,000	

5. 2024.10.27.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2,5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구입하였으며, 구입일에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일의 기준시가는 토지 ₩360,000,000, 건물 ₩40,000,000, 2024.2.1.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은 토지 ₩427,500,000, 건물 ₩22,500,000이다. 2024.11.5.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철거비용은 ₩25,000,000이 발생하였다. 2024.11.20.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설계 용역을 ₩10,000,000에 공급받았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4.10.1. ~ 2024.12.31.)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공제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 금액은 (-) 부호를 사용하고, 해당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하시오.) (8점)

<답안 양식>

<자료 1>의 항목번호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액
1		
2		
3		
4		
5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생선판매사업)을 겸영하는 (주)한국(중소기업 아님) 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202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기간구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22년 제1기	630억원	270억원
2022년 제2기	710억원	290억원
2023년 제1기	726억원	374억원
2023년 제2기	828억원	322억원
2024년 제1기	816억원	384억원
2024년 제2기*1)	832억원	448억원

*1) 2024.10.1.~ 2024.12.31. 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은 448억원, 면세공급가액은 232억원임

2. 2022.10.9. 공급가액 ₩200,000,000의 건물A를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3. 2018.9.9. 취득가액 ₩500,000,000(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되지 않음)에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B를 2024.10.20.부터 면세사업에도 일부 사용하게 되었다. 2024.10.20. 현재 건물B의 장부가액은 ₩450,000,000, 기준시가는 ₩480,000,000이다.

4. 2023.9.9. 취득가액 ₩55,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C를 2024.11.1.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24.11.1. 현재 기계장치C의 장부가액은 ₩42,000,000이다.

5. 202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생선의 매입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주)한국은 생선의 매입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기준금액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정한다.)

구 분	적 요	2024.7.1.~2024.9.30.	2024.10.1.~2024.12.31.
입 고	기간 초일 생선재고액	₩300,000,000*1)	₩400,000,000
	생선매입	4,200,000,000	4,500,000,000
출 고	생선판매로 사용	1,908,000,000	1,995,500,000
	생선통조림 원료로 사용	2,192,000,000	2,404,500,000
	기간 말일 생선재고액*2)	400,000,000	500,000,000

*1)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것으로 2024년 제1기 확정신고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24.7.1.~2024.9.30. 중 ₩99,978,000은 생

선판매로 사용되었고 ₩200,022,000은 생선통조림 원료로 사용됨(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액은 공제한도내의 금액임)

*2)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4.10.1. ~ 2024.12.31.)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증가 금액 또는 감소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하시오.) (8점)

<답안 양식>

<자료 2>의 항목번호	납부세액 증가 금액	납부세액 감소 금액
2		
3		
4		
5		

<자료 3> 다음은 개인사업자 甲의 2024.7.1. 현재의 보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1)	장부가액	시가
상품	2024.5.30.	₩880,000	₩880,000	₩900,000
소모품	2024.4.20.	₩330,000	₩330,000	₩300,000
토지	2019.7.10.	₩16,500,000	₩16,500,000	₩20,000,000
건물	2019.7.10.	₩27,500,000	₩24,750,000	₩30,000,000
기계장치	2023.10.15.	₩3,520,000	₩3,160,000	₩3,000,000
건설중인자산*2)	건설중	-	₩11,000,000	₩12,000,000

*1) 취득가액은 甲이 간이과세자로서 매입한 경우 공급대가를 의미하며, 甲이 일반과세자로서 매입한 경우 공급가액을 의미함

*2)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500,000으로 2023.10.1. 이후 매입분임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① 2024.6.30.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이었던 甲이 2024.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② 2024.6.30. 이전에는 일반과세자이었던 甲이 2024.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의 재고납부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甲의 사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2019.12.31. 이전은 20%, 2020.1.1. 이후는 15%로 가정함) (4점)

<답안 양식>

구분	금액
① 재고매입세액	
② 재고납부세액	